

부속서 III

서비스 및 투자에 대한 유보 및 비합치 조치 목록

브루나이다루살람

목록 가

주해

1. 이 목록은 제8.8조(비합치 조치 목록) 및 제10.8조(유보 및 비합치 조치)에 따라,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브루나이다루살람의 기존의 조치를 규정한다.

가. 제8.4조(내국민 대우) 또는 제10.3조(내국민 대우)

나. 제8.5조(시장접근)

다. 제8.6조(최혜국 대우) 또는 제10.4조(최혜국 대우)

라. 제8.11조(현지주재)

마. 제10.6조(이행요건 금지), 또는

바. 제10.7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2. 이 목록의 각 유보항목은 다음 요소를 규정한다.

가. **분야**는 유보된 분야를 지칭한다.

나. **하위 분야**는 유보된 특정 하위 분야를 지칭한다.

다. **의무의 유형**은 제8.8조(비합치 조치 목록) 및 제10.8조(유보 및 비합치 조치)에 따라, 열거된 조치에 적용되지 않는 제1항에 언급된 의무를 명시한다.

라. 조치내용은 유보된 비합치 조치를 규정한다. 그리고

마. 조치근거는 유보된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적시한다. 이 요소에 인용된 조치는

- 1) 이 협정의 발효일에 개정, 지속 또는 갱신된 대로의 조치를 말한다. 그리고
- 2) 그 조치의 권한에 따라 그리고 이에 합치되게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하위 조치를 포함한다.

3. 제8.8조(비합치 조치 목록) 및 제10.8조(유보 및 비합치 조치)에 따라, 유보항목의 의무의 유형 요소에 명시된 이 조들은 그 유보항목의 조치내용 요소에 적시된 비합치 조치와 관련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4. 제8.11조(현지주재)에 대하여 유보된 조치는 제8.4조(내국민 대우)에 대하여 유보될 필요가 없다.

5. 제8장(서비스 무역)에 따른 금융서비스에 대한 약속은 이 주해 및 이 목록에 규정된 제한 및 조건에 따라 수행된다.

6. 제8.5조(시장접근)에 따른 브루나이다루살람의 약속에서, 브루나이다루살람의 법,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설립되고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법인은 법적 형태에 대한 비차별적 제한의 적용대상이다¹.

7. 이슬람 금융 생산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금융기관은 이슬람 생산품과 그에 연관된 모든 사안에 관한 그들의 운영 및 사업 거래와 관련하여 브루나이다루살람의 법, 규정 및 지침 및 감독 기구가 결정한 샤리아 요건의 적용대상이 된다.

¹ 예를 들어, 파트너십과 단독소유기업은 일반적으로 브루나이다루살람에서 예금금융기관으로 수용 가능한 법적 형태가 아니다. 이 주해는 그 자체로서 다른 쪽 당사자 금융기관의 지점 간 또는 자회사 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거나, 또는 달리 제한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는다.

8. 브루나이다루살람은 다음의 전제요건을 조건으로 시스템상으로 중요한 외국 은행 지점을 브루나이다루살람 현지에 설립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그러한 조치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방식으로 부과된다.

나. 브루나이다루살람은 그 은행에 대한 본국의 규정과 감독의 특성, 브루나이다루살람의 예금자와 관련하여 본국 예금자에게 부여되는 보호의 정도 및 브루나이다루살람에서 보유하는 자산의 규모를 적절히 고려한다.

다. 그 요건의 부과 전에, 현지에 그 은행을 설립하려는 브루나이다루살람의 의사는 최소 6개월 전에 그 은행과 그 은행이 기원한 당사자에 통보된다.

라. 브루나이다루살람은 그 요건에 관하여 관련 당사자와 협의하며 관련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표명한 견해를 고려한다. 그리고

마. 그 은행이 그 요건을 준수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제공한다.

1	분야	:	모든 분야
	하위 분야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조치내용	:	<p><u>서비스 무역 및 투자</u></p> <p>1. <u>단독소유기업 및 협동조합</u></p> <p>외국 국민은 단독소유기업 또는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p> <p>2. <u>파트너십</u></p> <p>외국 국민은 사업명 등록기관(Registrar of Business Names)의 서면 승인을 받지 않는 한 파트너십을 설립할 수 없다.</p> <p>3 <u>회사 이사직</u></p> <p>외국 국민은 2 인의 이사 중 1 인, 또는 이사가 2 인 보다 많은 경우에는 최소 2 인이 브루나이다루살람에 상시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한 브루나이다루살람에서 설립된 기업의 이사직을 맡을 수 없다.</p> <p>4.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외국 국민은 브루나이다루살람에 상시적으로 거주하기 위한 신청을 재정경제부에 제출할 것이다.</p>
	조치근거	:	회사법(제 39 장)

		<p>사업명법(제 92 장)</p> <p>협동조합법(제 84 장)</p> <p>2004 년 고용기관명령</p> <p>행정 조치 및 지침</p>
--	--	---

2	분야	:	모든 분야
	하위 분야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조치내용	:	<p><u>투자</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 면허는 열거된 조치에 적시된 상업적 재산의 운영을 위하여 브루나이 국민에게만 부여될 수 있다. 2. 사업 면허는 보건 및 안전 규정의 집행을 위하여 요구되며, 이 목록에 달리 규정된 그러한 사업 면허가 요구되는 경우 그 밖의 모든 상업적 활동에 외국 국민이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다.
	조치근거	:	<p>2016 년 미용 및 보건 시설 명령</p> <p>지역위원회법(제 57 장)</p> <p>도로교통법(제 68 장)</p> <p>공공오락법(제 181 장)</p> <p>행정 조치 및 지침</p>

3	분야	:	제조업 및 제조업 부수 서비스
	하위 분야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조치내용	:	<u>투자</u> 1. 제조업 활동을 위하여 관련 정부 당국의 통제하에 있는 부지를 활용하는 이 분야에서의 모든 외국인 투자는 현지 지분 보유가 요구된다. 2. 외국인 투자자는 브루나이다루살람에서 생산된 상품을 구매, 사용, 또는 이에 대하여 선호를 부여하는 요건이나 현지 공급자로부터 상품을 구매하는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한, 이러한 부지를 활용할 수 없다.
	조치근거	:	브루나이다루살람 국가개발계획 행정 조치 및 지침

4	분야	:	농업 및 농업 부수 서비스
	하위 분야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조치내용	:	<p><u>투자</u></p> <p>1 농업 및 농업 활동 부수 서비스를 위하여 관련 정부 당국의 통제하에 있는 부지를 활용하는 이 분야에서의 모든 외국인 투자는 현지 지분 보유가 요구된다.</p> <p>2 외국인 투자자는 다음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한, 이러한 부지를 활용할 수 없다.</p> <p>가. 브루나이다루살람에서 생산된 상품을 구매, 사용, 또는 이에 대하여 선호를 부여하거나 현지 공급자로부터 상품을 구매할 것, 또는</p> <p>나. 국내 재료의 일정 수준 또는 비율을 달성할 것</p>
	조치근거	:	<p>브루나이다루살람 국가개발계획</p> <p>할랄육법(제 183 장)</p> <p>행정 조치 및 지침</p>

5	분야	:	수산업 및 수산업 부수 서비스
	하위 분야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조치내용	:	<u>투자</u> 1. 수산업 및 수산업 활동 부수 서비스를 위하여 관련 정부 당국의 통제하에 있는 부지를 활용하는 이 분야에서의 모든 외국인 투자는 현지 지분 보유가 요구된다. 2. 외국인 투자자는 브루나이다루살람에서 생산된 상품을 구매, 사용, 또는 이에 대하여 선호를 부여하는 요건이나 현지 공급자로부터 상품을 구매하는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한, 이러한 부지를 활용할 수 없다.
	조치근거	:	브루나이다루살람 국가개발계획 2009 년 수산업명령 2002 년 수산업(어류 양식장)규정 2002 년 수산업(어류 양륙 단지)규정 2002 년 수산업(어류 가공 작업장)규정 브루나이다루살람 수산업제한법(제 130 장) 행정 조치 및 지침

6	분야	: 임업 및 임업 부수 서비스 (별목 및 제재는 제외된다)
	하위 분야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조치내용	: <u>투자</u> 1.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외국 국민 또는 기업은 임업 또는 임업 부수 서비스에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업을 설립할 수 없다. 가. 브루나이 국민 또는 기업과의 합작투자를 통하여 그 외국 국민 또는 기업이 70퍼센트를 넘는 지분을 소유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나. 외국 국민 또는 기업이 부과될 수 있는 모든 이행요건을 준수하는 경우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유보항목은 별목과 제재 활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조치근거	: 1989 년 국가임업정책 브루나이다루살람 국가개발계획 산림법(제 46 장) 행정 조치 및 지침(2004-2023 년 전략계획)

7	분야	: 건설 서비스
	하위 분야	
	의무의 유형	: 현지주재(제 8.11 조) 내국민 대우(제 10.3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조치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1.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외국 국민 또는 기업은 빌딩 관련 일반 건설업 서비스, 토목 관련 일반 건설업, 설치 및 조립 서비스, 광업을 제외한 빌딩 완성 및 마무리 작업 서비스, 그리고 기계 엔지니어링 서비스 같은 건설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허용되지 않는다. 가. 브루나이다루살람에서 설립된 기업을 통한 경우 나. 외국 국민 또는 기업이 계약자로 ‘Sijil Pendaftaran Kontraktor’ (증명서 A), 또는 공급자로 ‘Sijil Lesen Pembina’ (증명서 B)를 최초 등록하는 경우, 또는 다. 기술 또는 그 밖의 재산권적 지식을 이전하기 위한 모든 요건이 기술 또는 재산권적 지식의 소유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저해하지 않고 브루나이다루살람에 의한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외국 국민과 기업이 브루나이다루살람에 있는 인에게 기술 또는 그 밖의 재산권적 지식을 이전하는 그러한 요건을 준수하는 경우

2. 증명서 A 의 경우 외국 국민 또는 기업은 아래 표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계약자 또는 공급자로 등록될 것을 신청하는 기업에 대한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표

등급	프로젝트 기준가	외국인 지분 허용 수준
I	최대 50,000 브루나이 달러	없음
II	50,000 브루나이 달러 초과 250,000 브루나이 달러 이하	없음
III	250,000 브루나이 달러 초과 500,000 브루나이 달러 이하	20 퍼센트
IV	500,000 브루나이 달러 초과 150 만 브루나이 달러 이하	50 퍼센트
V	150 만 브루나이 달러 초과 500 만 브루나이달러	70 퍼센트

		<table border="1"> <tr> <td></td> <td>이하</td> <td></td> </tr> <tr> <td>VI</td> <td>500 만 브루나이달러 초과</td> <td>90 퍼센트</td> </tr> <tr> <td>빌딩 전문가 및 공급자</td> <td>기준가 없음</td> <td>90 퍼센트</td> </tr> <tr> <td>기계 및 전기 전문가 및 공급자</td> <td>기준가 없음</td> <td>90 퍼센트</td> </tr> </table>		이하		VI	500 만 브루나이달러 초과	90 퍼센트	빌딩 전문가 및 공급자	기준가 없음	90 퍼센트	기계 및 전기 전문가 및 공급자	기준가 없음	90 퍼센트
	이하													
VI	500 만 브루나이달러 초과	90 퍼센트												
빌딩 전문가 및 공급자	기준가 없음	90 퍼센트												
기계 및 전기 전문가 및 공급자	기준가 없음	90 퍼센트												
		<p>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증명서 A 는 정부 및 민간 프로젝트 참가에 요구되는 증명서를 지칭하는 반면에, 증명서 B 는 민간 프로젝트 참가에만 요구되는 증명서를 지칭한다.</p>												
조치근거	:	<p>2011 년 건축사, 전문 엔지니어 및 건설원가관리사에 관한 명령</p> <p>2014 년 건물통제명령</p> <p>2014 년 건물통제규정</p> <p>개발부 계약자 및 공급자 등록 절차(2012 년판)</p> <p>행정 조치 및 지침</p>												

8	분야	: 환경 서비스
	하위 분야	
	의무의 유형	: 현지주재(제 8.11 조) 내국민 대우(제 10.3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조치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1.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외국 국민 또는 기업은 환경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자문 서비스, 폐기물 관리 서비스, 경관 설계 관리 및 유지 서비스, 그리고 경비 서비스와 노변 및 청소 작업 서비스 공급이 허용되지 않는다. 가. 외국 국민과 기업이 브루나이다루살람에서 기업으로 설립된 경우 나. 외국 국민과 기업이 계약자 또는 공급자로 ‘Sijil Pendaftaran Kontraktor’ (증명서 A), 또는 ‘Sijil Lesen Pembina’ (증명서 B)로 최초 등록하는 경우, 또는 다. 기술 또는 그 밖의 재산권적 지식을 이전하기 위한 모든 요건이 기술 또는 재산권적 지식의 소유자와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저해하지 않고 브루나이다루살람에 의한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외국 국민과 기업이

브루나이다루살람에 있는 인에게 기술 또는 그 밖의 재산권적 지식을 이전하는 요건을 준수하는 경우

2. 증명서 A 의 경우 외국 국민 또는 기업은 아래 표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계약자 또는 공급자로 등록될 것을 신청하는 기업에 대한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표

등급	프로젝트 기준가	외국인 지분 허용 수준
I	최대 50,000 브루나이달러	없음
II	50,000 브루나이달러 달러 초과 250,000 브루나이달러 이하	없음
III	250,000 브루나이달러 초과 500,000 브루나이달러 이하	20 퍼센트
IV	500,000 브루나이달러 초과 150 만 브루나이달러 이하	50 퍼센트
V	150 만 브루나이달러 초과 500 만 브루나이달러 이하	70 퍼센트

	<table border="1" data-bbox="651 241 1385 645"> <tr> <td data-bbox="651 241 885 353">VI</td> <td data-bbox="885 241 1220 353">500 만 브루나이달러 초과</td> <td data-bbox="1220 241 1385 353">90 퍼센트</td> </tr> <tr> <td data-bbox="651 353 885 472">빌딩 전문가 및 공급자</td> <td data-bbox="885 353 1220 472">기준가 없음</td> <td data-bbox="1220 353 1385 472">90 퍼센트</td> </tr> <tr> <td data-bbox="651 472 885 645">기계 및 전기 전문가 및 공급자</td> <td data-bbox="885 472 1220 645">기준가 없음</td> <td data-bbox="1220 472 1385 645">90 퍼센트</td> </tr> </table> <p data-bbox="651 719 1385 927">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증명서 A 는 정부 및 민간 프로젝트 참가에 요구되는 증명서를 지칭하는 반면에, 증명서 B 는 민간 프로젝트 참가에만 요구되는 증명서를 지칭한다.</p>	VI	500 만 브루나이달러 초과	90 퍼센트	빌딩 전문가 및 공급자	기준가 없음	90 퍼센트	기계 및 전기 전문가 및 공급자	기준가 없음	90 퍼센트
VI	500 만 브루나이달러 초과	90 퍼센트								
빌딩 전문가 및 공급자	기준가 없음	90 퍼센트								
기계 및 전기 전문가 및 공급자	기준가 없음	90 퍼센트								
조치근거	<p data-bbox="651 999 1334 1088">: 2002 년 브루나이다루살람의 산업개발을 위한 공해 통제 지침</p> <p data-bbox="651 1167 1310 1205">2009 년 토공 개발 계획 지침(환경민감지역 중심)</p> <p data-bbox="651 1283 1137 1321">2010 년 산업개발 계획 지침 및 표준</p> <p data-bbox="651 1400 1066 1438">2016 년 환경보호 및 관리 명령</p> <p data-bbox="651 1516 1350 1554">2013 년 유해폐기물명령(수출, 수입 및 통과외 통제)</p> <p data-bbox="651 1632 887 1671">행정 조치 및 지침</p>									

9	분야	: 사업 서비스
	하위 분야	공공 감사 서비스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조치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1. 외국 국민 또는 기업은 승인을 받은 브루나이 감사인이 최소한 1 인 이상인 파트너십이나 합작투자를 통하지 않는 한 브루나이다루살람에 금융 감사 기업을 설립할 수 없다. 2. 브루나이다루살람에서 금융 감사 기업이 설립되지 않은 경우,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외국 국민 또는 기업은 브루나이다루살람에서 금융 감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가. 재정경제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나. 재정경제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여 현지 설립 감사인 또는 기업을 통한 경우 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은”이라는 용어는 금융 감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재정경제부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자격을 갖춘 인을 지칭한다.

조치근거	: 회사법 (제 39 장) 2010 년 회계사 명령 행정 조치 및 지침
------	---

10	분야	:	사업 서비스
	하위 분야		수의료 서비스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조치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외국 국민 또는 기업은 브루나이다루살람에 설립된 파트너십 또는 합작투자인 기업을 통하고 그 외국 국민 또는 기업이 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모든 기업에서 51 퍼센트를 넘는 지분을 소유하지 않는 한, 브루나이다루살람에서 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조치근거	:	회사법(제 39 장) 2005 년 수의사 명령 행정 조치 및 지침

11	분야	:	사업 서비스
	하위 분야		산업디자인 서비스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조치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외국 국민 또는 기업은 브루나이다루살람에 설립된 파트너십 또는 합작투자인 기업을 통하고 그 외국 국민 또는 기업이 산업디자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모든 기업에서 51 퍼센트를 넘는 지분을 소유하지 않는 한, 브루나이다루살람에서 산업디자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조치근거	:	회사법(제 39 장) 2000 년 산업디자인규칙 1999 년 산업디자인명령 [E.O.] 행정 조치 및 지침

12	분야	:	사업 서비스
	하위 분야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조치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외국 국민 또는 기업은 그들이 브루나이다루살람에 상시적으로 거주하고 브루나이다루살람에 설립된 기업을 통하지 않는 한, 상업적 주체를 통하여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조치근거	:	회사법(제 39 장) 2001 년 브루나이다루살람 정보통신기술산업 관한 명령 행정 조치 및 지침

13	분야	:	통신 서비스
	하위 분야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조치내용	:	<p><u>서비스 무역 및 투자</u></p> <p>1.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외국 국민 또는 기업은 브루나이다루살람이 브루나이다루살람 영역에서 면허²를 요구하는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p> <p>가. 외국 국민 또는 기업이 브루나이다루살람에서 물리적인 사업적 주재를 유지하는 경우</p> <p>나. 외국 국민 또는 기업이 브루나이다루살람에서 허가받은 운영자와의 상업적 약정을 통하여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p> <p>다. 브루나이 국민 또는 기업과의 합작투자를 통하고 그 외국 국민 또는 기업이 51퍼센트를</p>

²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기반 서비스(OTT 서비스)는 현재 브루나이다루살람에서 면허가 요구되지 않는다.

		<p>넘는 지분을 소유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p> <p>라. 요구되는 경우, 외국 국민 또는 기업이 공중통신망의 제공 또는 공중통신 서비스의 공급에 사용되는 그들의 전송 장비를 브루나이다루살람에 위치시키는 경우</p> <p>2. 외국 국민 또는 기업은 부과될 수 있는 이행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한 통신 서비스에 관련된 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p>
조치근거	:	<p>2001 년 통신명령</p> <p>2006 년 AiTi 운영 체계</p>

14	분야	: 사업 서비스
	하위 분야	건축 서비스 엔지니어링 서비스 통합 엔지니어링 서비스 건설원가관리 서비스 관련 과학 및 기술 자문 서비스 측량 서비스 도시계획 및 경관 서비스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현지주재(제 8.11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조치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1.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외국 국민 또는 기업은 건축서비스, 엔지니어링 서비스, 통합 엔지니어링 서비스, 그리고 건설원가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가. 외국 국민 또는 기업이 연간 최소 90일 동안 브루나이다루살람에 거주하며 브루나이다루살람 건축사, 전문 엔지니어 및 건설원가관리사 협회에 그 분야에서의 “건축사, 전문 엔지니어 또는 건설원가관리사”로 등록된 경우 나. 외국 국민 또는 기업이 브루나이다루살람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공급자가 브루나이다루살람 건축사, 전문 엔지니어 및 건설원가관리사 협회에 그 분야에서의 “건축사, 전문 엔지니어 또는 건설원가관리사로 등록되고 면허증을 소지”한 현지 기업을 통한 경우, 또는

다. 브루나이다루살람에 설립된 파트너십 또는 합작투자인 기업을 통하여 그 외국인 지분 참여가 51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으며 최소 1인의 브루나이 국민이 브루나이다루살람 건축사, 전문 엔지니어 및 건설원가관리사 협회에 그 분야에서의 “건축사, 전문 엔지니어 또는 건설원가관리사”로 등록되고 면허증을 소지한 경우

2.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외국 국민 또는 기업은 도시계획 및 경관 서비스, 관련 과학 및 기술 자문 서비스, 그리고 측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가. 외국 국민 또는 기업이 연간 최소 90일 동안 브루나이다루살람에 거주하며 개발부에 그 분야에서의 “계획사 또는 측량사”로 등록된 경우

나. 외국 국민 또는 기업이 브루나이다루살람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공급자가 개발부에 그 분야에서의 “계획사 또는 측량사”로 등록된 현지 기업을 통한 경우, 또는

		<p>다. 브루나이다루살람에 설립된 파트너십 또는 합작투자인 기업을 통하여 그 외국인 지분 참여가 51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으며 최소 1인의 브루나이 국민이 개발부에 그 분야에서의 “계획사 또는 측량사”로 등록된 경우</p>
조치근거	:	<p>2011년 건축사, 전문 엔지니어 및 건설원가관리사에 관한 명령</p> <p>면허토지측량사법(제 100 장)</p> <p>1981년 면허토지측량사규정</p> <p>2014년 도시계획사등록명령</p> <p>2015년 도농계획명령</p> <p>행정 조치 및 지침</p>

15	분야	:	민간 보건 및 사회 서비스
	하위 분야		일반 의료인 전문 의료인 치의료인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조치내용	:	<u>서비스 무역</u> 외국 국민이 일반 의료인, 전문 의료인 또는 치의료인으로서 보건부 산하 공립 병원, 보건 센터 또는 클리닉에서의 임상 서비스 3 년을 포함하여 최소 6 년 동안 누적하여 브루나이 다루살람에서 근무한 경우가 아닌 한, 그 외국 국민은 일반 의료, 전문 의료 또는 치의료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민간 영업을 제공할 수 없다.
	조치근거	:	의료인 및 치의료인 법(제 112 장)

16	분야	:	사회 서비스
	하위 분야		장애인을 위한 보육 서비스를 포함하는 보육 서비스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조치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외국 국민 또는 기업은 브루나이다루살람에 설립된 파트너십 또는 합작투자인 기업을 통하고 그 외국 국민 또는 기업이 51 퍼센트를 넘는 지분을 소유하지 않는 경우가 아닌 한, 장애인을 위한 보육 서비스를 포함하는 보육 서비스를 설립할 수 없다.
	조치근거	:	행정 조치 및 지침

17	분야	:	그 밖의 보건 의료 서비스
	하위 분야		간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의약 서비스
	의무의 유형	:	시장접근(제 8.5 조) 내국민 대우(제 10.3 조)
	조치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외국 국민 또는 기업은 브루나이다루살람에 설립된 파트너십 또는 합작투자인 기업을 통하여 그 외국 국민 또는 기업이 의약 서비스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모든 기업에서 49 퍼센트를 넘는 지분을 소유하지 않는 경우가 아닌 한, 상업적 주채를 통하여 의약 서비스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조치근거	:	의료인 및 치의료인 법(제 112 장) 행정 조치 및 지침

18	분야	:	그 밖의 보건 관련 및 사회 서비스
	하위 분야		구급차 서비스
	의무의 유형	:	시장접근(제 8.5 조) 내국민 대우(제 10.3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조치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외국 국민 또는 기업은 브루나이다루살람에 설립된 파트너십 또는 합작투자인 기업을 통하고 그 외국 국민 또는 기업이 51 퍼센트를 넘는 지분을 소유하지 않는 경우가 아닌 한, 상업적 주체를 통하여 구급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조치근거	:	행정 조치 및 지침

19	분야	:	관광 및 여행 관련 서비스
	하위 분야		여행사 직원 여행 대행 서비스 여행 가이드 서비스(조류관찰로 한정한다) 그 밖의 관광 및 여행 관련 서비스
	의무의 유형	:	시장접근(제 8.5 조) 내국민 대우(제 10.3 조)
	조치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외국 국민 또는 기업은 여행사, 여행 대행 서비스, 조류관찰 여행 가이드 서비스 또는 그 밖의 관광 및 여행 관련 서비스를, 브루나이다루살람에 설립된 파트너십 또는 합작투자인 회사를 통하여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그 외국 국민 또는 기업이 51 퍼센트를 넘는 지분을 소유하지 않는 경우가 아닌 한, 상업적 주재를 통하여 설립할 수 없다.
	조치근거	:	2016 년 관광명령 행정 조치 및 지침

20	분야	:	관광업
	하위 분야		호텔, 보딩 하우스나 숙소 호텔 및 레스토랑(케이터링을 포함한다)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조치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외국 국민 또는 기업은 상업적 주재를 통하여 호텔, 보딩 하우스나 숙소 또는 케이터링 서비스를 포함하는 호텔 및 레스토랑을 설립할 수 없다. 가. 브루나이 국민 또는 기업과 합작투자를 통하고 그 외국인 지분 참여가 51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나. 고위 관리자의 과반수가 브루나이 국민인 경우, 그리고 다. 브루나이다루살람에서 생산된 상품을 구매, 사용 또는 이에 대하여 선호를 부여하거나 현지 공급자로부터 상품을 구매하는 선호가 존재하는 경우
	조치근거	:	행정 조치 및 지침

21	분야	: 레크리에이션, 문화 및 스포츠 서비스
	하위 분야	<p>뉴스 통신사 서비스</p> <p>도서관 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기술(즉, 6D 극장) - 도서관 마케팅 자문(서비스 및 사업장, 신규 도서관 설립, 그리고 사용자 수요 연구를 포함한다) - 도서관 자료 공급(아동 도서, 현지 작가의 전자책 또는 전자저널 등) - 민간 도서관 설립 <p>기록보존소 서비스</p> <p>스포츠 행사 홍보 서비스</p> <p>스포츠 행사 조직 서비스</p> <p>스포츠 시설 운영 서비스</p> <p>컴퓨터 예약 시스템 서비스</p>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조치내용	<p>: <u>투자</u></p> <p>1. 외국 국민 또는 기업은 브루나이다루살람에 설립된 합작투자인 기업을 통해서 그 외국 국민 또는 기업이 51퍼센트를 넘는 지분을 소유하지 않는 경우가 아닌 한, 상업적 주재를 통하여 뉴스 통신사 서비스, 도서관 서비스(정보기술, 도서관 마케팅 자문, 도서관 자료 공급, 민간 도서관 설립), 기록보존소 서비스, 그리고 스포츠 행사 홍보, 조직이나 운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p>

		<p>2. 외국 국민 또는 기업은 브루나이다루살람에 설립된 합작투자인 기업을 통하여 그 외국 국민 또는 기업이 40퍼센트를 넘는 지분을 소유하지 않는 경우가 아닌 한, 상업적 주채를 통하여 컴퓨터 예약 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p>
	<p>조치근거</p>	<p>: 행정 조치 및 지침</p>

22	분야	:	운송 서비스
	하위 분야		철도 운송 서비스
	의무의 유형	:	시장접근(제 8.5 조) 내국민 대우(제 10.3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조치내용	:	<p><u>서비스 무역 및 투자</u></p> <p>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외국 국민 또는 기업은 상업적 주재를 통하여 철도 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p> <p>가. 브루나이다루살람에 설립된 합작투자인 기업을 통하여 철도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모든 기업에서 그 외국 국민 또는 기업이 40 퍼센트를 넘는 지분을 소유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p> <p>나. 설립된 그러한 모든 기업에서 고위경영자의 과반수가 브루나이 국민인 경우</p>
	조치근거	:	행정 조치 및 지침

23	분야	:	운송 서비스
	하위 분야		해상 여객 운송 서비스 해상 화물 운송 서비스(에너지 상품은 제외한다)
	의무의 유형	:	시장접근(제 8.5 조) 내국민 대우(제 10.3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조치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외국 국민 또는 기업은 무아라 항에서의 상업적 주재를 통하여 해상운송 서비스의 부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가. 브루나이다루살람에 설립된 합작투자인 기업을 통하고 그 외국 국민 또는 기업이 해상운송 서비스의 부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모든 기업에서 40퍼센트를 넘는 지분을 소유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나. 설립된 그러한 모든 기업에서 고위경영자의 과반수가 브루나이 국민인 경우
	조치근거	:	행정 조치 및 지침

24	분야	:	운송 서비스
	하위 분야		우주 운송
	의무의 유형	:	시장접근(제 8.5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조치내용	:	<p><u>서비스 무역 및 투자</u></p> <p>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외국 국민 또는 기업은 상업적 주재를 통하여 우주 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p> <p>가. 브루나이다루살람에 설립된 합작투자인 기업을 통하고 그 외국 국민 또는 기업이 우주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모든 기업에서 40퍼센트를 넘는 지분을 소유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p> <p>나. 설립된 그러한 모든 기업에서 고위경영자의 과반수가 브루나이 국민인 경우</p>
	조치근거	:	행정 조치 및 지침

25	분야	:	운송 서비스
	하위 분야		승무원을 동반한 항공기 임대
	의무의 유형	:	시장접근(제 8.5 조) 현지주재(제 8.11 조) 내국민 대우(제 10.3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조치내용	:	<p><u>서비스 무역 및 투자</u></p> <p>1.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외국 국민 또는 기업은 브루나이다루살람에서 운영자를 동반하지 않는 항공기 관련 임대나 리스 서비스, 또는 승무원을 동반한 항공기 임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p> <p>가. 1) 오직 브루나이다루살람에 일정한 주소를 둔 대표사무소를 통하는 경우, 또는</p> <p>2) 오직 브루나이인이 통제하는 총판매 대리점의 지정을 통하는 경우</p> <p>나. 설립된 그러한 모든 기업에서 고위경영자의 과반수가 브루나이 국민인 경우</p> <p>다. 항공기가 인증된 경우, 그리고</p>

		<p>라. 그 서비스가 기반시설 역량 조건 및 제한을 조건으로 하는 브루나이다루살람에 의하여 승인된 경우</p>
	<p>조치근거</p>	<p>: 회사법(제 39 장)</p> <p>행정 조치 및 지침</p>

26	분야	: 사업 서비스
	하위 분야	운영자를 동반하지 않는 항공기 관련 임대나 리스 서비스
	의무의 유형	: 시장접근(제 8.5 조) 현지주재(제 8.11 조) 내국민 대우(제 10.3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조치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1.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외국 국민 또는 기업은 브루나이다루살람에서 운영자를 동반하지 않는 항공기 관련 임대나 리스 서비스, 또는 승무원을 동반한 항공기 임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가. 1) 오직 브루나이다루살람에 일정한 주소를 둔 대표사무소를 통하는 경우, 또는 2) 오직 브루나이인이 통제하는 총판매 대리점의 지정을 통하는 경우 나. 설립된 그러한 모든 기업에서 고위경영자의 과반수가 브루나이 국민인 경우

		<p>다. 항공기가 인증된 경우, 그리고</p> <p>라. 그 서비스가 기반시설 역량 조건 및 제한을 조건으로 하는 브루나이다루살람에 의하여 승인된 경우</p>
	<p>조치근거</p>	<p>: 회사법 (제 39 장)</p> <p>행정 조치 및 지침</p>

27	분야	: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하위 분야		녹음 서비스 및 시청각 후반 제작 지원 서비스를 포함하는 시청각 서비스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조치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외국 국민 또는 기업은 브루나이다루살람에 설립된 파트너십 또는 합작투자인 기업을 통하여 그 외국 국민 또는 기업이 시청각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모든 기업에서 51 퍼센트를 넘는 지분을 소유하지 않는 경우가 아닌 한, 상업적 주채를 통하여 시청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조치근거	:	행정 조치 및 지침

28	분야	: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하위 분야		쿠리어 서비스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조치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외국 국민 또는 기업은 브루나이다루살람에 설립된 파트너십 또는 합작투자인 기업을 통하고 그 외국 국민 또는 기업이 쿠리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모든 기업에서 49 퍼센트를 넘는 지분을 소유하지 않는 경우가 아닌 한, 상업적 주재를 통하여 쿠리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조치근거	:	행정 조치 및 지침

29	분야	: 교육 서비스
	하위 분야	최대 기간 3 개월 과정의 성인 교육(민간 교육) 그 밖의 교육 서비스(외국어 교육 센터)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조치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1.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외국 국민 또는 기업은 상업적 주재를 통하여 성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가. 브루나이다루살람에 설립된 합작투자인 기업을 통하고 그 외국 국민 또는 기업이 성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모든 기업에서 49퍼센트를 넘는 지분을 소유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나. 외국인 직원이 인력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2.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외국 국민 또는 기업은 상업적 주재를 통하여 외국어 교육 센터를

		<p>제공할 수 없다.</p> <p>가. 브루나이다루살람에 설립된 합작투자인 기업을 통하고 그 외국 국민 또는 기업이 외국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모든 기업에서 49퍼센트를 넘는 지분을 소유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p> <p>나. 설립된 그러한 모든 기업에서 고위관리자의 과반수가 브루나이 국민인 경우</p>
조치근거	:	<p>교육법(제 210 장)</p> <p>행정 조치 및 지침</p>

30	분야	:	금융서비스
	하위 분야		금융회사
	의무의 유형	:	시장접근(제 8.5 조)
	조치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외국 국민 또는 기업은 브루나이다루살람에 설립되지 않는 한 금융 사업 또는 이슬람 금융서비스를 수행할 수 없다.
	조치근거	:	금융회사법(제 89 장)

31	분야	:	금융서비스
	하위 분야		환전 및 송금업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조치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외국 국민 또는 기업은 환전 및 송금업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이 사업에 부여되는 면허의 수는 제한된다.
	조치근거	:	환전 및 송금업법(제 174 장)

32	분야	:	금융서비스
	하위 분야		보험
	의무의 유형	:	시장접근(제 8.5 조)
	조치내용	:	<p><u>서비스 무역</u></p> <p>외국 국민 또는 기업은 직접 또는 브루나이다루살람에서 허가받은 보험사 또는 타카풀(takaful) 사업자의 중개인을 통하여 가입되지 않는 한, 강제적인 자동차 제 3 자 책임보험과 근로자 상해보상보험을 제공할 수 없다.</p>
	조치근거	:	<p>자동차보험(제 3 자 위험)법(제 90 장)</p> <p>근로자 상해보상보험법(제 74 장)</p>

33	분야	:	금융서비스
	하위 분야		보험 중개업자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조치내용	:	<p><u>서비스 무역 및 투자</u></p> <p>1. <u>보험 대리인</u></p> <p>외국 국민은 브루나이다루살람에서 보험 대리인으로 등록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p> <p>2. <u>보험 중개인</u></p> <p>외국 국민 또는 기업은 브루나이다루살람에 설립된 경우가 아닌 한 보험 중개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p>
	조치근거	:	<p>2006 년 보험명령</p> <p>2008 년 타카풀명령</p> <p>회사법(제 39 장)</p> <p>사업명법(제 92 장)</p>

34	분야	:	금융서비스
	하위 분야		은행
	의무의 유형	:	시장접근(제 8.5 조)
	조치내용	:	<p><u>서비스 무역</u></p> <p>외국 국민 또는 기업은 다음의 조건으로 브루나이다루살람 통화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닌 한 어떠한 외주 활동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p> <p>가. 외주된 활동이 신용평가, 처리, 행정 또는 어떠한 관련 핵심 은행 활동과 관련이 없는 경우, 그리고</p> <p>나. 외주 활동이 금융기관의 인적자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현지 직원의 삭감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p>
	조치근거	:	<p>2006 년 은행명령</p> <p>2008 년 이슬람 은행명령</p> <p>외주 지침</p>

35	분야	:	금융서비스
	하위 분야		보험 및 타카풀
	의무의 유형	:	시장접근(제 8.5 조)
	조치내용	:	<p><u>서비스 무역 및 투자</u></p> <p>외국 국민 또는 기업은 브루나이다루살람에서 설립되고 허가받은 보험사를 통한 경우가 아닌 한, 연금, 장애, 소득, 상해 및 건강 보험을 포함하는 모든 직접 생명보험 또는 타카풀 생산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p>
	조치근거	:	<p>2006 년 보험명령</p> <p>2008 년 타카풀명령</p> <p>2010 년 브루나이 통화당국명령</p>

36	분야	:	금융서비스
	하위 분야		보험 및 타카풀
	의무의 유형	:	시장접근(제 8.5 조)
	조치내용	:	<p><u>서비스 무역 및 투자</u></p> <p>외국 국민 또는 기업은 브루나이다루살람에서 설립되고 허가받은 보험 또는 타카풀 회사를 통한 경우가 아닌 한, 연금, 장애, 소득, 상해 및 건강 보험과 신원보증보험, 계약 이행보증보험 또는 유사 보증보험을 포함하는 모든 직접 손해보험 또는 타카풀 생산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p>
	조치근거	:	<p>2006 년 보험명령</p> <p>2008 년 타카풀명령</p> <p>2010 년 브루나이 통화당국명령</p>

37	분야	:	금융서비스
	하위 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시장접근(제 8.5 조)
	조치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외국 국민 또는 기업은 브루나이다루살람에 설립되고 허가받은 은행, 이슬람 은행 또는 금융 회사를 통한 경우가 아닌 한, 예금 및 그 밖의 상환성 자금의 인수와 관련된 어떠한 활동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조치근거	:	2006 년 보험명령 2008 년 이슬람 은행명령 2010 년 브루나이 통화당국명령

38	분야	:	금융서비스
	하위 분야		모든 분야
	의무의 유형	:	시장접근(제 8.5 조)
	조치내용	:	<p><u>서비스 무역 및 투자</u></p> <p>외국 국민 또는 기업은 브루나이다루살람에 설립되고 허가받은 실체를 통한 경우가 아닌 한, 금융 정보, 금융 자료 처리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제공 및 이전에 관련된 어떠한 국경 간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p>
	조치근거	:	<p>2006 년 은행명령</p> <p>2008 년 이슬람 은행명령</p> <p>금융회사법(제 89 장)</p> <p>2006 년 보험명령</p> <p>2008 년 타카풀명령</p> <p>2013 년 증권시장명령</p> <p>2015 년 증권시장규정</p> <p>환전 및 송금업법(제 174 장)</p> <p>외주 지침</p> <p>2010 년 브루나이 통화당국명령</p>

39	분야	:	금융서비스
	하위 분야		자본시장
	의무의 유형	:	시장접근(제 8.5 조)
	조치내용	:	<p><u>서비스 무역 및 투자</u></p> <p>외국 국민 또는 기업은 자본시장 서비스 면허 또는 자본시장 서비스 대표 면허를 소지한 실체에 의하여 또는 그를 통하여 수행되는 경우가 아닌 한, 신용 조회 및 분석, 투자 및 포트폴리오 조사와 자문, 인수 및 기업구조조정과 전략에 관한 자문을 포함하는 모든 유형의 자문 또는 그 밖의 부수 서비스를 수행 및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p>
	조치근거	:	<p>2013 년 증권시장명령</p> <p>2015 년 증권시장규정</p>

40	분야	:	금융서비스
	하위 분야		재보험 및 재재보험(생명 및 손해)
	의무의 유형	:	시장접근(제 8.5 조)
	조치내용	:	<p><u>서비스 무역 및 투자</u></p> <p>외국 국민 또는 기업은 브루나이다루살람에서 설립되고 허가받은 재보험사 또는 재타카풀 운영자를 통하지 않는 한, 모든 유형의 재보험 및 재재보험(생명 및 손해)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p>
	조치근거	:	<p>2006 년 보험명령</p> <p>2008 년 타카풀명령</p>

목록 나

주해

1. 이 목록은 제8.8조(비합치 조치 목록) 및 제10.8조(유보 및 비합치 조치)에 따라, 브루나이다루살람이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에 합치하지 않는 기존의 조치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또는 더 제한적인 조치를 채택할 수 있는 특정 분야 또는 활동을 규정한다.

가. 제8.4조(내국민 대우) 또는 제10.3조(내국민 대우)

나. 제8.5조(시장접근)

다. 제8.6조(최혜국 대우) 또는 제10.4조(최혜국 대우)

라. 제8.11조(현지주재)

마. 제10.6조(이행요건 금지), 또는

바. 제10.7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2. 이 목록의 각 유보항목은 다음 요소를 규정한다.

가. **분야**는 유보된 분야를 지칭한다.

나. **하위 분야**는 유보된 특정 하위 분야를 지칭한다.

다. **관련 의무**는 제8.8조(비합치 조치 목록) 및 제10.8조(유보 및 비합치 조치)에 따라, 유보항목에 열거된 분야, 하위 분야 또는 활동에 적용되지 않는 제1항에 언급된 의무를 명시한다.

라. **유보내용**은 그 유보항목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 하위 분야 또는 활동의 범위를 규정한다. 그리고

마. **기존의 조치**는, 명시된 경우, 투명성의 목적상, 그 유보항목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 하위 분야 또는 활동에 적용되는 기존의 조치에 대한 비열거적인 목록을 적시한다.

3. 제8.8조(비합치 조치 목록) 및 제10.8조(유보 및 비합치 조치)에 따라, 유보항목의 관련 의무 요소에 명시된 조들은 그 유보항목의 유보내용 요소에 적시된 분야, 하위 분야 및 활동에 적용되지 않는다.

4. 제8장(서비스 무역)에 따른 금융서비스에 대한 약속은 이 주해 및 이 목록에 규정된 제한 및 조건에 따라 수행된다.

5.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8.5조(시장접근)에 따른 브루나이다루살람의 약속에서, 브루나이다루살람의 법,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설립되고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법인은 법적 형태에 대한 비차별적 제한의 적용대상이다³.

6. 이슬람 금융 생산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금융기관은 이슬람 생산품과 그에 연관된 모든 사안에 관한 금융기관의 운영 및 사업 거래의 통제를 위한 모든 감독 기구와 브루나이다루살람의 법에 의하여 결정된 샤리아 요건의 적용대상이 된다.

³ 예를 들어, 파트너십과 단독소유기업은 일반적으로 브루나이다루살람에서 예금금융기관으로 수용 가능한 법적 형태가 아니다. 이 주해는 그 자체로서 다른 쪽 당사자 금융기관의 지점 간 또는 자회사 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달리 제한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는다.

7. 브루나이다루살람은 다음의 전제요건을 조건으로 시스템상으로 중요한 외국 은행 지점이 브루나이다루살람 현지에 설립된 은행이 될 것을 요구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그러한 조치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그리고 공정한 방식으로 부과된다.

나. 브루나이다루살람은 그 은행에 대한 본국의 규정과 감독의 특성, 브루나이다루살람 예금자와 관련하여 본국 예금자에게 부여되는 보호의 정도 및 브루나이다루살람에 보유하는 자산의 규모를 적절히 고려한다.

다. 그 요건의 부과 전에, 현지에 그 은행을 설립하려는 브루나이다루살람의 의사는 최소 6개월 전에 그 은행과 그 은행이 기원한 당사자에 통보된다.

라. 브루나이다루살람은 그 요건에 관하여 관련 당사자와 협의하며 관련 당사자에게 대하여 표명한 견해를 적절히 고려한다. 그리고

마. 그 은행이 그 요건을 준수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제공한다.

1	분야	:	모든 분야
	하위 분야		
	관련 의무	:	<p>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p> <p>시장접근(제 8.5 조)</p> <p>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p> <p>현지주재(제 8.11 조)</p> <p>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p> <p>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p>
	유보내용	:	<p><u>서비스 무역 및 투자</u></p> <p>브루나이다루살람은 다음을 포함하는 정부 자산, 실체 또는 기관의 민영화, 기업화, 상업화 또는 매각에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가. 자산 소유권에 대한 제한</p> <p>나. 지분이나 그들의 자산의 이전 또는 처분</p> <p>다. 외국인 투자자의 권리 또는 그들의 자산을 통제할 그들의 투자, 그리고</p> <p>라. 고위경영진 또는 이사회 구성원의 국적</p>
	기존의 조치		

2	분야	: 모든 분야
	하위 분야	
	관련 의무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최혜국 대우(제 10.4 조)
	유보내용	: <u>투자</u> 브루나이다루살람은 추밀원의 승인과 동의의 대상이 되고 다음을 포함하는 모든 토지 거래 및 이용에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1. 토지 소유권 및 임대, 그리고 2. 그러한 토지와 연관된 천연자원의 이용을 포함하여 그러한 토지를 보유하는 조건 브루나이다루살람은 토지의 분할 및 병합, 토지 이용, 토지 계획, 그리고 토목공사 및 국유지와 사유지의 건물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 토지규범(제 40 장) 토지규범(스트라타)법(제 189 장) 1973 년 도농계획(토지의 분할 및 병합 통제)규정

		<p>1974 년 도농계획(토지 및 건물의 개발과 이용 통제)규정</p> <p>2015 년 도농계획명령</p> <p>2014 년 건축물통제명령(BCO)</p> <p>2016 년 토지구범(개정)명령</p> <p>2016 년 감정인 및 부동산 중개인(개정) 명령</p>
--	--	--

3	분야	:	모든 분야
	하위 분야		
	관련 의무	:	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
	유보내용	:	<p><u>서비스 무역 및 투자</u></p> <p>브루나이다루살람은 다음에 차등 또는 특혜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 협정의 발효일 전 체결되거나 발효 중인 양자, 지역 또는 다자 국제 협정에 따른 모든 국가⁴ 2. 이 협정의 발효일 후 발효 중이거나 체결된 아세안 회원국 간의 협정 또는 약정에 따른 모든 아세안 회원국, 그리고 3. 다음과 관련하여 이 협정의 발효일 후 발효 중이거나 체결된 모든 국제 협정에 따른 모든 국가 <p>가. 항공 서비스</p> <p>나. 해상 및 항구 사안</p>

⁴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는 관련 양자, 지역 또는 다자 국제협정의 후속 검토 또는 개정 에 따라 부여되는 특혜 대우로 확대된다.

			<p>다. 수산업</p> <p>라. 전자상거래</p> <p>마. 방송, 그리고</p> <p>바. 육상 운송</p>
	기존의 조치		

4	분야	:	모든 분야
	하위 분야		
	관련 의무	:	시장접근(제 8.5 조)
	유보내용	:	<p><u>서비스 무역</u></p> <p>브루나이다루살람은 제9장(자연인의 일시적 이동)을 조건으로 그리고 GATS 제16조에 따른 브루나이다루살람의 의무에 불합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어떠한 분야에서 고용될 수 있는 외국인 자연인의 총수에 관한 조치를 포함하여 자연인의 주재에 의한 서비스의 공급에 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기존의 조치		

5	분야	:	모든 분야
	하위 분야		
	관련 의무	:	<p>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p> <p>시장접근(제 8.5 조)</p> <p>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p> <p>현지주재(제 8.11 조)</p> <p>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p> <p>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p>
	유보내용	:	<p><u>서비스 무역 및 투자</u></p> <p>브루나이다루살람은 자신의 필수적인 안보 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자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기존의 조치		

6	분야	: 모든 분야
	하위 분야	
	관련 의무	: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유보내용	<p data-bbox="735 544 799 577">: <u>투자</u></p> <p data-bbox="735 658 1385 976">브루나이다루살람은 다음의 조건으로 기술, 생산 공정 또는 그 밖의 재산권적 지식을 브루나이다루살람의 인에게 이전하는 것에 관련된 요건, 약속 또는 의무부담의 부과 및 집행에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 data-bbox="799 1072 1385 1279">가. 브루나이다루살람에서의 투자의 설립, 인수, 확장, 경영, 수행, 운영 및 매각이나 그 밖의 처분을 위한 조건, 또는</p> <p data-bbox="799 1391 1385 1653">나. 브루나이다루살람에서의 투자의 설립, 인수, 확장, 경영, 수행, 운영 및 매각이나 그 밖의 처분과 관련하여 이익의 수령 또는 지속적 수령을 위한 조건</p>
	기존의 조치	

7	분야	:	수산업 및 수산업 부수 서비스
	하위 분야		
	관련 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브루나이다루살람은 자신의 영역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모든 수산업 활동에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	브루나이다루살람 국가개발계획 2009 년 수산업명령 2002 년 수산업(어류 양식장) 규정 2002 년 수산업(어류양륙 단지) 규정 2002 년 수산업(어류가공 작업장) 규정 브루나이다루살람 수산업제한법(제 130 장) 배타적 경제수역 성명(Sup. IIA) 행정 조치 및 지침

8	분야	:	별목 및 제재
	하위 분야		
	관련 의무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유보내용	:	<p><u>투자</u></p> <p>브루나이다루살람은 별목 및 제재 활동에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기존의 조치	:	<p>브루나이다루살람 국가개발계획</p> <p>브루나이다루살람 장기개발계획</p> <p>산림법(제 46 장)</p> <p>1989 년 국가임업정책</p> <p>행정 조치 및 지침</p>

9	분야	:	광업 및 채석업, 그리고 광업 및 채석업의 부수 서비스
	하위 분야	:	모래 및 왕자갈
	관련 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브루나이다루살람은 이 하위 분야에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는 실리카 모래 퇴적지의 채광, 채석, 제조 및 수출을 포함하여 그러한 퇴적지에 관련된 활동의 상업화에 대한 모든 조치를 포함한다.
	기존의 조치	:	광업법(제 42 장) 행정 조치 및 지침

10	분야	:	석유 및 가스
	하위 분야		
	관련 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브루나이다루살람은 석유 및 가스 산업에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	석유광산법(제 44 장)(수시 개정) 2002 년 브루나이 국영 석유회사 센디리안 베르하드 명령(수시 개정) 석유(파이프라인)법(제 45 장)(수시 개정) 행정 조치 및 지침

11	분야	:	석탄
	하위 분야		
	관련 의무	:	<p>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p> <p>시장접근(제 8.5 조)</p> <p>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p> <p>현지주재(제 8.11 조)</p> <p>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p> <p>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p>
	유보내용	:	<p><u>서비스 무역 및 투자</u></p> <p>브루나이다루살람은 브루나이다루살람에 매장된 석탄의 탐사, 추출 및 이용을 포함하는 이 분야에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기존의 조치		

12	분야	:	사업 서비스
	하위 분야		농업, 수렵 및 임업 부수 서비스 광업 부수 서비스 제조업 부수 서비스 에너지 유통 부수 서비스
	관련 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시장접근(제 8.5 조) 최혜국 대우(제 8.6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u> 브루나이다루살람은 위에 열거된 분야의 부수 서비스에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13	분야	:	사업 서비스
	하위 분야		직업 소개 및 공급 서비스 고용대행업체 비무장 경비 서비스를 포함하는 조사 및 경비 컨벤션 서비스
	관련 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브루나이다루살람은 직업 소개 및 공급 서비스, 고용대행업체, 비무장 경비 서비스를 포함하는 조사 및 경비, 그리고 컨벤션 서비스에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	2004 년 고용대행업체에 관한 명령 행정 조치 및 지침

14	분야	:	사업 서비스
	하위 분야		연구개발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과학 및 엔지니어링 연구개발 서비스 - 인문사회과학 연구개발 서비스 - 학제간 연구개발 서비스
	관련 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브루나이다루살람은 연구개발 서비스의 공급에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15	분야	: 사업 서비스
	하위 분야	<p>그 밖의 사업 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고 공간이나 시간의 판매 또는 대여 서비스 - 광고 계획, 제작 및 배치 서비스 - 그 밖의 광고 서비스(광고 자문 서비스)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 서비스 - 경영 자문 서비스 - 경영 자문 관련 서비스(달리 분류되지 않은 경영 서비스를 포함한다) - 기술적 검사 및 분석 서비스(그 밖의 기술적 검사 및 분석 서비스를 포함한다) - 관련 과학 및 기술 자문 서비스 - 장비의 정비 및 수리(선박, 항공기 또는 그 밖의 운송 장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 빌딩 청소 서비스 - 사진 서비스 - 포장 서비스 - 복제 서비스 - 번역 및 통역 서비스 - 우편 목록 취합 및 우편 서비스 - 전문디자인 서비스
	관련 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시장접근(제 8.5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u> 브루나이다루살람은 위에 열거된 분야에 관한

		브루나이다루살람에서의 서비스의 공급에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16	분야	:	사업 서비스
	하위 분야		<p>운영자를 동반하지 않는 임대 또는 리스 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 관련 - 그 밖의 운송 장비 관련
	관련 의무	:	<p>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p> <p>시장접근(제 8.5 조)</p> <p>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p> <p>현지주재(제 8.11 조)</p> <p>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p> <p>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p>
	유보내용	:	<p><u>서비스 무역 및 투자</u></p> <p>브루나이다루살람은 브루나이다루살람에서 운영자를 동반하지 않는 선박 또는 그 밖의 운송 장비의 임대 또는 리스 서비스에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기존의 조치		

17	분야	:	사업 서비스
	하위 분야		전문직 서비스 - 법률 서비스
	관련 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브루나이다루살람은 브루나이다루살람에서의 법률 서비스의 공급에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18	분야	:	사업 서비스
	하위 분야		감정인 및 부동산 중개인
	관련 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브루나이다루살람은 감정인 및 부동산 중개인 서비스의 공급에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19	분야	:	사업 서비스
	하위 분야		세무
	관련 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브루나이다루살람은 소득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조세 당국이 발급한 통보에 대한 답변 제출 및 이의 신청 제출, 그리고 조세 관련 납부 처리를 포함하는 그들의 세무에서 납세자(개인 또는 기업)의 대리인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20	분야	:	사업 서비스
	하위 분야		<p>운영자를 동반하지 않는 임대 또는 리스 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관련 - 개인용품 및 가정용품 관련 임대 또는 리스 서비스
	관련 의무	:	<p>내국민 대우(제 8.4 조)</p> <p>시장접근(제 8.5 조)</p>
	유보내용	:	<p><u>서비스 무역</u></p> <p>브루나이다루살람은 그 밖의 기계 및 장비와 개인용품 및 가정용품에 관련된 운영자를 동반하지 않는 임대 또는 리스 서비스에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기존의 조치	:	<p>회사법(제 39 장)</p> <p>행정 조치 및 지침</p>

21	분야	: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하위 분야		우편 서비스
	관련 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브루나이다루살람은 우편 서비스에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22	분야	:	유통 서비스
	하위 분야		
	관련 의무	:	<p>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p> <p>시장접근(제 8.5 조)</p> <p>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p> <p>현지주재(제 8.11 조)</p> <p>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p> <p>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p>
	유보내용	:	<p><u>서비스 무역 및 투자</u></p> <p>브루나이다루살람은 유통 서비스에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기존의 조치		

23	분야	:	민간 보건 서비스
	하위 분야		약사, 간호사, 조산사 및 연합 보건 서비스 민간 실험실 서비스 민간 방사선학 서비스
	관련 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1. 브루나이다루살람은 약사, 간호사, 조산사 및 연합 보건 서비스의 민간 영업에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2. 브루나이다루살람은 민간 실험실 서비스 및 민간 방사선학 서비스의 설립에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24	분야	:	보건 관련 및 사회 서비스
	하위 분야		실험실 서비스 및 엑스레이 서비스를 제외한 병원 서비스
	관련 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시장접근(제 8.5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브루나이다루살람은 실험실 서비스 및 엑스레이 서비스를 제외한 병원 서비스에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25	분야	:	보건 관련 및 사회 서비스
	하위 분야		병원 서비스 - 실험실 서비스 - 엑스레이 서비스
	관련 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시장접근(제 8.5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브루나이다루살람은 민간 실험실 서비스 및 민간 방사선학 서비스의 설립에 관련된 상업적 주재에 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26	분야	:	민간 보건 서비스
	하위 분야		민간 보건 센터 또는 클리닉
	관련 의무	:	시장접근(제 8.5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p><u>서비스 무역 및 투자</u></p> <p>브루나이다루살람은 민간 보건 센터 또는 클리닉의 설립에 관련된 다음을 포함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가. 그러한 민간 보건 센터 또는 클리닉이 브루나이 국민과의 합작투자 형태로 설립될 것을 요구하는 것</p> <p>나. 브루나이다루살람에 설립될 수 있는 민간 보건 센터 또는 클리닉의 수를 제한하는 것</p> <p>다. 그러한 민간 보건 센터 또는 클리닉이 브루나이다루살람 영역에서의 연구개발 또는 기술이전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 또는</p> <p>라. 민간 보건 센터 또는 클리닉에서 고위 관리자의 과반수가 브루나이 국민일 것을 요구하는 것</p>
	기존의 조치		

27	분야	:	그 밖의 보건의료서비스
	하위 분야		간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관련 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유보내용	:	<p><u>서비스 무역 및 투자</u></p> <p>브루나이다루살람은 목록 가에 기술된 경우를 제외하고 간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련된 상업적 주재에 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기존의 조치		

28	분야	:	그 밖의 보건 관련 및 사회 서비스
	하위 분야		구급차 서비스
	관련 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u> 브루나이다루살람은 목록 가에 기술된 경우를 제외하고 구급차 서비스에 관련된 상업적 주재에 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29	분야	: 레크리에이션, 문화 및 스포츠 서비스
	하위 분야	뉴스 통신사 서비스 도서관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기술(즉, 6D 극장) - 도서관 마케팅 자문(서비스 및 사업장, 신규 도서관 설립, 그리고 사용자 수요 연구를 포함한다) - 도서관 자료 공급(아동 도서, 현지 작가의 전자책 또는 전자저널 등) - 민간 도서관 설립 기록보존소 서비스 스포츠 행사 홍보 서비스 스포츠 행사 조직 서비스 스포츠 시설 운영 서비스 컴퓨터 예약 시스템 서비스
	관련 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u> 브루나이다루살람은 목록 가에 기술된 경우를 제외하고 뉴스 통신사 서비스, 도서관 서비스(정보기술, 도서관 마케팅 자문, 도서관 자료 공급, 민간 도서관 설립), 기록보존소 서비스, 그리고 스포츠 행사 홍보, 조직 또는 운영 서비스에 관련된 상업적 주재에 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30	분야	:	관광 및 여행 관련 서비스
	하위 분야		호텔, 보딩 하우스나 숙소 호텔 및 레스토랑(케이타링을 포함한다) 여행사 직원 여행 대행 서비스 여행 가이드 서비스(조류관찰로 한정한다) 그 밖의 관광 및 여행 관련 서비스(분류되지 않음)
	관련 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u> 브루나이다루살람은 목록 가에 기술된 경우를 제외하고 호텔, 보딩 하우스나 숙소, 케이타링을 포함한 호텔 및 레스토랑, 여행사 직원, 여행 대행 서비스, 조류관찰로 한정된 여행 가이드 서비스, 그리고 그 밖의 관광 및 여행 관련 서비스(분류되지 않음)에 관련된 상업적 주재에 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31	분야	:	그 밖의 관광 서비스
	하위 분야		유스호스텔 골프장 마리나 시설
	관련 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브루나이다루살람은 유스호스텔, 골프장 및 마리나 시설에 관련된 상업적 주재에 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32	분야	:	레크리에이션, 문화 및 스포츠 서비스
	하위 분야		테마파크
	관련 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브루나이다루살람은 브루나이다루살람에서 테마파크를 위한 서비스의 공급에 관련된 상업적 주체에 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33	분야	:	방송 서비스
	하위 분야		
	관련 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브루나이다루살람은 방송 서비스에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34	분야	: 뉴스 수집 및 발간 그리고 신문 배포에 관련된 사안을 포함하는 신문의 인쇄, 출판 및 복제
	하위 분야	
	관련 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브루나이다루살람은 뉴스 수집 및 발간 그리고 신문 배포에 관련된 사안을 포함하는 신문의 인쇄, 출판 및 복제에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35	분야	:	운송 서비스
	하위 분야		항공 운송 서비스
	관련 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브루나이다루살람은 다음을 포함하는 항공 운송 서비스에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브루나이다루살람에서의 공항 및 헬기장의 소유, 운영 및 관리 나. 지상조업작업의 공급 다. 특수 항공 서비스 라. 여객 운송 마. 화물 운송 바. 항공기 정비 및 수리, 그리고 사. 항공 운송 지원 서비스
	기존의 조치		

36	분야	:	운송 서비스
	하위 분야		육상 운송 서비스
	관련 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브루나이다루살람은 다음을 포함하는 육상 운송 서비스의 공급에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여객 운송 나. 화물 운송 다. 운영자를 동반한 상용차 라. 예선 서비스 마. 도로 운송 장비의 정비 및 수리, 그리고 바. 도로 운송 서비스 지원 서비스
	기존의 조치		

37	분야	:	운송 서비스
	하위 분야		파이프라인 운송
	관련 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브루나이다루살람은 연료 및 그 밖의 상품의 운송을 포함하는 파이프라인 운송에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38	분야	:	운송 서비스
	하위 분야		해상 운송 서비스를 위한 예선 서비스 내륙 수로 운송을 위한 예선 지원 서비스 철도 운송 서비스를 위한 지원 서비스
	관련 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브루나이다루살람은 해상 운송 서비스를 위한 예선 서비스, 내륙 수로를 위한 예선 지원 서비스, 그리고 철도 운송 서비스를 위한 지원 서비스에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39	분야	:	해상 운송 서비스
	하위 분야		선원을 동반한 선박 임대 선박의 정비 및 수리 해운대리업 서비스 해상 운송 보조 서비스 해상 운송 지원 서비스
	관련 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시장접근(제 8.5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u> 브루나이다루살람은 선원을 동반한 선박 임대, 선박의 정비 및 수리, 해운대리업 서비스, 해상 운송 보조 서비스, 그리고 해상 운송 지원 서비스에 관련된 해상 운송 서비스를 위한 상업적 주재에 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40	분야	:	해상 운송 서비스
	하위 분야		화물 운송(에너지 상품의 경우)
	관련 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브루나이다루살람은 에너지 상품을 위한 화물 운송에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41	분야	:	운송 서비스
	하위 분야		<p>내륙 수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 운송 서비스 - 화물 운송 서비스 - 선원을 동반한 선박 임대 - 선박의 정비 및 수리 - 내륙 수로 운송 지원 서비스
	관련 의무	:	<p>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p> <p>시장접근(제 8.5 조)</p> <p>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p> <p>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p>
	유보내용	:	<p><u>서비스 무역 및 투자</u></p> <p>브루나이다루살람은 내륙 수로 운송 서비스에 관련된 상업적 주재에 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기존의 조치		

42	분야	:	운송 서비스
	하위 분야		철도 운송 서비스
	관련 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유보내용	:	<p><u>서비스 무역 및 투자</u></p> <p>브루나이다루살람은 목록 가에 기술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분야에 관련된 상업적 주재에 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기존의 조치		

43	분야	:	운송 서비스
	하위 분야		우주 운송
	관련 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브루나이다루살람은 목록 가에 기술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분야에 관련된 상업적 주재에 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44	분야	:	그 밖의 운송 서비스
	하위 분야		화물 운송 대행 서비스 및 그 밖의 화물 운송 서비스(화물 취합 및 개품산적 서비스로 한정한다)
	관련 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유보내용	:	<p><u>서비스 무역</u></p> <p>브루나이다루살람은 목록 가에 기술된 경우를 제외하고 화물 운송 서비스 및 그 밖의 화물 운송 서비스(화물 취합 및 개품산적 서비스로 한정한다)에 관련된 상업적 주재에 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기존의 조치		

45	분야	:	그 밖의 운송 서비스
	하위 분야		화물 운송 대행서비스 및 그 밖의 화물 운송 서비스(화물 취합 및 개품산적 서비스는 제외한다)
	관련 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브루나이다루살람은 화물 취합 및 개품산적 서비스만을 제외한 화물 운송 서비스 및 그 밖의 화물 운송 서비스에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46	분야	:	모든 운송 형태의 부수 서비스
	하위 분야		
	관련 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브루나이다루살람은 모든 운송 형태의 부수 서비스에 관련된 상업적 주재에 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47	분야	:	사업 서비스
	하위 분야		운영자를 동반하지 않는 항공기 관련 임대 또는 리스 서비스
	관련 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브루나이다루살람은 목록 가에 기술된 경우를 제외하고 운영자를 동반하지 않는 항공기 관련 임대 또는 리스 서비스에 관련된 상업적 주재에 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48	분야	: 민간 교육 서비스
	하위 분야	
	관련 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현지주재(제 8.11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브루나이다루살람은 브루나이다루살람 시민을 위한 민간 교육 서비스의 공급에 관련된 다음을 포함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학교 및 고등학습기관의 소유권에 외국 국민 또는 회사의 지분 보유 나. 브루나이다루살람에 설립될 수 있는 학교 및 고등학습기관의 총수 다. 교사를 포함하는 직원의 총수, 또는 라. 고위경영진 또는 이사의 국적
	기존의 조치	

49	분야	:	교육 서비스
	하위 분야		최대 기간 3 개월 과정의 성인 교육(민간 교육)
	관련 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유보내용	:	<p><u>서비스 무역</u></p> <p>브루나이다루살람은 목록 가에 기술된 경우를 제외하고 민간 교육을 위한 최대 기간 3 개월 과정의 성인 교육에 관련된 상업적 주재에 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기존의 조치	:	교육법(제 210 장)

50	분야	:	고등 교육 서비스
	하위 분야		
	관련 의무	:	<p>시장접근(제 8.5 조)</p> <p>현지주재(제 8.11 조)</p> <p>내국민 대우(제 10.3 조)</p> <p>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p> <p>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p>
	유보내용	:	<p><u>서비스 무역 및 투자</u></p> <p>브루나이다루살람은 브루나이다루살람 시민을 위한 고등교육서비스의 공급에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기존의 조치	:	교육법(제 210 장)

51	분야	:	교육 서비스
	하위 분야		초등 및 중등 교육 서비스를 위한 국제 학교
	관련 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시장접근(제 8.5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u> 브루나이다루살람은 초등 및 중등 교육 서비스를 위한 국제 학교에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52	분야	:	전력 서비스
	하위 분야		
	관련 의무	:	시장접근(제 8.5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브루나이다루살람은 전기 에너지의 발전, 공급, 송전 및 배전에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53	분야	:	매매 서비스
	하위 분야		식용 음용수의 공급
	관련 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브루나이다루살람은 음용수의 공급에 관련된 다음을 포함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공공사업으로의 물 공급 나. 지하수 추출, 또는 다. 물 수출
	기존의 조치		

54	분야	:	매매 서비스
	하위 분야		담배 도매 서비스 및 소매 서비스
	관련 의무	:	시장접근(제 8.5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u> 브루나이다루살람은 담배 생산품의 도매 및 소매 서비스의 공급에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55	분야	:	무역박람회 및 전시회 조직 서비스
	하위 분야		
	관련 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u> 브루나이다루살람은 무역박람회 및 전시회 조직 서비스에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	공공오락법(제 181 장)

56	분야	: 금융서비스
	하위 분야	자본시장 청산 및 결제 서비스
	관련 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최혜국 대우(제 8.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1. 브루나이다루살람은 다음의 설립 또는 운영에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청산 및 결제 서비스 나. 중앙 증권 예탁기관 다. 거래정보저장소 라. 거래 시설 마. 신용평가기관 바. 거래소, 또는 사. 증권 및 선물 시장

		<p>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유보항목은 그러한 모든 거래소 또는 증권 시장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하려는 금융기관에 적용된다.</p>
	<p>조치근거</p>	<p>: 2010 년 브루나이 통화당국명령</p> <p>2013 년 증권시장명령</p> <p>2015 년 증권시장규정</p> <p>2015 년 지급 및 결제시스템에 관한 (감독)명령</p>

57	분야	:	신용조사서비스
	하위 분야		
	관련 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시장접근(제 8.5 조) 최혜국 대우(제 8.6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u> 브루나이다루살람은 신용조사서비스의 설립 및 운영에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	2010 년 브루나이 통화당국명령 2006 년 은행명령 2008 년 이슬람 은행명령

58	분야	:	금융서비스
	하위 분야		은행
	관련 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시장접근(제 8.5 조) 최혜국 대우(제 8.6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u> 브루나이다루살람은 허가받은 외국 은행 지점이 이용할 수 없는 현지 설립 은행의 대우에 관련된 다음을 포함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지점 장소의 수, 또는 나. 제공되는 은행업 ⁵ 의 유형
	기존의 조치	:	2010 년 브루나이 통화당국명령 2006 년 은행명령 2008 년 이슬람 은행명령

⁵ 은행업은 2006년 은행명령 제2절과 2008년 이슬람 은행명령 제2절의 정의에 따른다.

59	분야	:	금융서비스
	하위 분야		모든 분야
	관련 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유보내용	:	<p><u>서비스 무역 및 투자</u></p> <p>1. 브루나이다루살람은 보조금 또는 이익의 부여에 관련된 다음을 포함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가. 정당한 국가 경제 개발 목표를 위하여 정부가 소유하거나 정부가 통제하는 실체, 그리고</p> <p>나. 이슬람 금융 개발을 목적으로 이슬람 은행, 타카풀 또는 재타카풀 및 이슬람 자본시장을 수행하는 이슬람 금융기관</p> <p>2. 브루나이다루살람은 중소기업 금융 프로그램에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기존의 조치	:	

60	분야	:	금융서비스
	하위 분야		은행
	관련 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브루나이다루살람은 은행에 허가를 부여하는 것에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61	분야	:	금융서비스
	하위 분야		모든 분야
	관련 의무	: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p><u>서비스 무역 및 투자</u></p> <p>브루나이다루살람은 고위 임원, 회장 및 이사회를 포함하는 금융기관의 핵심 책임자의 임명에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기존의 조치		